

2019년도 제2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8.(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 위원(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0건(안건번호 제2019-143839호~14389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법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가 타당할 것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3839호-143899호(○○○○○ 사이트의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등 70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본건 심의안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모두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전번호 제2019-143839호~143899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 본건 심의 대상 게시물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불법 복제,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에서 상영 중이거나 최근 개봉한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여 권리자의 이익 침해가 크고 그 구제가 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들 게시물과 관련하여 OSP에게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의한 삭제, 전송중단 또는 게시자에 대하여 동호에 의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게시물이 이미 삭제되거나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제24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